

《세수징수관리법(개정 의견수렴본)》 “신규” 및 “변경”사항 해설

2025.04

Issue 2

개요

2025년 3월 28일, 국가세무총국 및 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개정 의견수렴본)》¹(이하 “《의견수렴본》”)을 발표함으로써, 현행 《세수징수관리법》²(이하 “《세수징수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만료일은 **2025년 4월 27일**입니다.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은 중국 세수징수관리의 지도 원칙을 담은 법률로, 1993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1년 전반적으로 개정되었으며 2013년과 2015년에 상사제도(商事制度, 법인등록제도) 개혁에 맞추어 개별 조문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는 《세수징수관리법 개정 초안(의견수렴본)》³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세수징수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바, 이번 개정은 지난 24년 동안 가장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 체납금, 세금 환급, 세금 추징, 세무조사, 자연인 강제 조치, 조세구제, 반조세회피 규칙, 세금정보 교환, 플랫폼 조세 감독관리, 탈세, 처벌 등 여러 방면을 망라하며, 기업 납세자와 세무기관뿐만 아니라 자연인 납세자, 플랫폼 운영자, 세무기관 이외의 다른 정부 기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PwC도 피드백을 제출하여 《세수징수관리법》의 개정에 대해 제안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상세 내용

이번 《의견수렴본》에서는 16개조가 새로 추가되었고, 4개조가 삭제되었으며 69개조가 수정되었습니다. PwC는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의 초보적인 관찰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세금 부과 및 환급

1. 법에 의한 세금 부과 [제 5 조, 36 조(여기서는 《의견수렴본》을 말하며, 이하 동일)]

주요 개정: 국무원 세무관할부문은 지역 간 세무 실무의 일관성 및 규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 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세수수입 지표를 제시할 수 없으며, 법규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결정한 세수 우대혜택은 무효입니다.

PwC의 관찰: 기업의 경영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법 집행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본》에서 “통일성과 규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 간 법집행의 차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흥산업의 세무처리/이슈사항의 정책실무 뿐만 아니라 세수 법집행 절차, 세수행정처벌의 결정 및 실행 모두에 있어 실체와 절차의 통일성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지방의 각급 정부가 세무기관에 세수수입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금 부과가 금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을 위반하여 세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는 최근 공표된 《공평경쟁 심사조례 실시방법》에서 규정한 “법적 근거 또는 국무원 승인 없이, 특정 경영자에게 세수 우대혜택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향후 기업은 국가의 현행 정책 테두리 안에서 현행 세수 우대혜택을 활용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해야 하며, 특정 지역의 세수 우대혜택(예: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따완취(大湾区, Great Bay Area), 및 서부 지역)과 관련된 경우, 실질적인 경영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 요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2. 건전한 세수신용체제 구축 [제 7 조]

주요 개정: 신용유지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을 잘 지키는 성실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세무처리에 있어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가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켜 연합징계조치를 실시합니다.

PwC의 관찰: 현재, 《중대 세수위법안건 당사자에 대한 연합징계조치 실시에 관한 협력 각서(2016)》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각서를 체결한 30 여 개 부문에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중대 세수위법안건 및 당사자 정보를 제공하고 연합징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조치에는 일부 고소비 행위 금지, 정부 공급 토지 취득 제한, 검사 및 검역 감독관리 강화, 정부 조달 참여 금지, 해관 인증기업 관리 적용 금지, 외환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연합징계의 범위와 조치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신용을 잘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영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계과세 규범화 [제 39 조]

주요 개정: 국무원 세무관할부문은 전국 통합 추계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PwC의 관찰: 《의견수렴본》에서 추계과세의 법정 적용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특정 자본 거래, 특정 산업 납세자가 추계과세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추계과세를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여 세수 구멍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공평경쟁 심사조례 실시방법》에서도 “특정 산업단지가 추계과세 등 방식의 시행을 통하여 특정 경영자로 하여금 세금을 과소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변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이에 반응하여 국가에서 추계과세를 관리하고 규범화하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무기관이 부문규장(部门规章)의 형식으로 전국 통일 추계징수제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계과세를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자신이 추계과세의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세금 체납금 [제 41, 42 조]

주요 개정: “체납금(滞纳金)”를 “세금체납금(税款滞纳金)”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금액은 일일 0.05%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省)급 이상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세금체납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1) 불가항력, 2) 세금 국고 납부 장소, 세목 성격, 징수기관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다시 납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추정기한이 이미 경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4) 기타의 경우.

PwC의 관찰: “체납금”에 대해 《행정강제법》 상 “체납금은 금전지급의무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 지역 세무기관은 상이한 처리실무가 있고, 세무기관과 법원 판례에서도 상이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인민법원판례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체납금 관련 사례의 관점에 따르면,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체납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기관이 행정강제집행을 시행하는 방식에 해당되므로 《행정강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세금체납금은 세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향후 “각급 법원이 안건을 심리할 때에는 판례데이터베이스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은 납세자와 세무기관의 법집행에 있어 상당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수렴본》에서 명칭을 “세금체납금”으로 변경한 것은 세금체납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강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데, 세금체납금에 상한이 없다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관점과 상충됩니다. 의견수렴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후 세무기관이 유사한 사안을 다룰 때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체납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상황 2)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 납부장소, 납부 당국이 잘못되어 납부장소를 변경하고 세금을 환급받아 다시 입고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보호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합법적인 세액 입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 3) “추징기한이 경과된 세금을 세무기관에 납부 시 세금체납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한다”는 지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징기한이 만료되었다면 세무기관은 추징권을 상실한 것이며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보충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 3)은 추징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상황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탈세/납세 거부/세금편취로 인해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경우로서 3 년이나 5 년을 경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한편, 《의견수렴본》에서는 세금체납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결정권이 성급 이상 세무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했으므로 향후 세금체납금을 면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출자자에 대한 미납 세금 추징의 신규 제도 [제 56 조]

주요 개정: 출자자가 법인의 독립적인 지위와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자금 몰래 회수 및 말소 등 수단을 이용하여 세무기관이 납세인으로부터 미납/과소납 세금 또는 과다 환급된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 세무기관은 출자자로부터 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할 권리가 있습니다.

PwC의 관찰: 현행 행정법 차원에서는 회사의 미납 세금을 출자자로부터 추징하도록 하는 권한을 세무기관에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가 회사 법인의 독립적인 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상 여러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二)》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1) 허위 청산보고서로 말소등기증을 편취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와 실제지배인이 채무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간이 말소 시 모든 채무가 이미 상환되었다는 주주의 확인이 사실이 아닌 경우, 말소 등기 전 채무에 대해 주주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말소 후에도 세무기관은 여전히 《회사법》에 근거하여 회사 주주로부터 미납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과거의 법원 판례에도 세무기관의 추징 요구를 지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법인격 부인 내용을 《세수징수관리법》에 직접 포함시켰으므로 세무기관은 더이상 《회사법》을 인용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법인과 그 출자자는 말소 전 세금 완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출자자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 세금 과다납부 시에도 환급해 주지 않는 특수 상황 [제 59 조]

주요 개정: 성급 이상 세무기관이 국가 유관 부문의 주장 또는 존재하는 증거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용자취득, 회사상장, 실적증가, 자격/자질취득 등 목적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관련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PwC의 관찰: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통상적으로 3 년 이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기업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려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했다가 나중에 더이상 상장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정확한 납세 신고를 하고 소급해서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본》에서는 상술한 상황으로 인한 과다납부 세金的 환급은 더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결정권은 성급 세무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유관 부문(예: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무제표의 오류를 정정했다면, 사실상 폐기된 재무제표에 따라 납부했던 세액의 과세표준이 이미 상실된 것이므로, 세액 환급을 불허하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급 세무기관은 “증거가 있어 판단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 것인지?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었으며 회계상 오류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유의할 만한 것은 2024 년 발표된 《세수징수관리 침해 형사 안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용자, 대출 등이 세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세금 공제를 통해 국가 세금이 편취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죄(증치세전용계산서 허위 발행 또는 수출환급/세액공제를 위한 기타

계산서 허위 발행)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의견수렴본》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조세채권의 우선권 [제 52 조]

주요 개정: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서 조세는 무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미납 세금이 담보물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조세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보다 우선합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조세가 유치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본》에서는 기업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기업파산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PwC의 관찰: 유치권을 법정 담보물권으로 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대상물에 대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며 그 주장하는 채권도 부여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세무기관이 유치물에 대해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고 논란도 크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파산의 경우 현행 《세수징수관리법》과 《기업파산법》에서 파산 재산의 채무 상환 우선순위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이 유발되기 십상입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이 경우 《기업파산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 즉 세금과 사회보험은 동일한 순위로 상환되고, 담보물권과 직원급여 대비 후순위, 일반파산채권 대비 선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일한 순서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비율에 따라 배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파산 안건에서 세무기관이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미납 세금 추징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8. 자연인 미납 세금 [제 45, 67 조]

주요 개정: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서 행정강제조치는 “생산/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생산/운영에 종사한다”는 것을 삭제했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연인의 재산에 대해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보다 엄격한 승인 절차를 실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일반적인 강제집행은 현(縣)급 세무국 국장이 승인하며, 자연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구(區)를 설정한 시(市)급 세무국 국장이 승인함).

PwC의 관찰: 기존에는 강제조치, 강제집행이 생산/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론적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수렴본》에서는 자연인의 재산에 대해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무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자연인 납세자, 특히 자산순액이 높은 인원들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9. 출국 금지 범위 확대 [제 51, 68 조]

주요 개정: 원래 출국 금지조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와 법정대표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주요 책임자, 실제지배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금 미납이 없더라도 중대한 조세 위법 안건을 처리할 때, 세무기관은 상기 중대한 안건 관련 인원의 출국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PwC의 관찰: 출국 금지 제한이 예전보다 엄격해졌고 일부 기업이 명의상 법정대표자를 일부러 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견수렴본》은 배후의 실제지배인과 주요 책임자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요 책임자”의 정의는 한층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회피방지 규칙

10. 특수관계거래 적용 범위 확대 [제 40 조]

주요 개정: 특수관계자간 독립거래원칙은 “기업 간”에서부터 기업과 기업, 기업과 자연인, 자연인과 자연인 간까지 확대됩니다. 납세자가 그 특수관계자와 비즈니스 거래를 할 경우,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거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독립거래원칙에 따르지 않고 대가를 수취하거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와 그 특수관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과세대상 수익 또는 소득액을 줄이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PwC의 관찰: 현재 《기업소득세법》 체계하의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며,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은 2018 년 개정 시, 이미 독립거래원칙을 도입한 바 있으나, 기타 세목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세목의 징수관리에 대한 상위 법률로서, 특수관계거래 규칙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향후 자연인 관련 거래에서도 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견수렴본》에서는 해당 거래가 “자신의” 과세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과세액을 줄이는 경우에도

세무기관은 이를 조정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그룹, 심지어 자연인 간 특수관계거래 계획의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조사와 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1.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 도입 [제 40 조]

주요 개정: “납세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계획을 실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면, 면제 또는 연기하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미리 받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조정을 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PwC의 관찰: 현재는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에만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의견수렴본》에서의 설명은 《기업소득세법》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보다 더 자세할 뿐만 아니라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미리 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본》에서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도입한 것은 향후 모든 세목의 조세 계획에서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의 조정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무기관과 납세자 모두에게 도전이 될 만합니다. 2014 년 공표된 《일반 조세회피방지 관리방법(시행)》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체계하의 일반 조세회피방지는 국가세무총국이 입안하고 안전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개인소득세 체계하에는 아직 자세한 실체와 절차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조세회피방지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법규를 구비하여 그 공백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조사 및 구제

12. 세무조사 [제 62, 64 조]

주요 개정: 세무조사 및 질의의 범위를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서부터 “기타 당사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지급대상 관련 장부/자료를 검사할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납세 관련 상황을 제공하라고 통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재산등기정보와 신분정보를 복사하고,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등록주소지, 화물 위탁보관처, 관련 물류기업, 송금 및 증권 거래 결제 자금 계좌, 비은행 지급기관의 지급 계좌 등을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자 방식으로 기장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관련 응용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 회계자료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했습니다.

PwC의 관찰: “기타 당사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납세자의 거래 상대방 등 관계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수렴본》은 세무기관에 알리페이, 위챗 등 비은행 지급기관의 지급 계좌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고, 응용 시스템에 접속해 회계자료를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세무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증거 수집 능력이 한 단계 더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정보 보유자도 세무기관에 협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13. 구제 수단 [제 101 조]

주요 개정: 행정부의(行政复议, 이의제기)를 위한 “사전 세금완납”이 취소되어, 더이상 세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行政诉讼)의 경우에는 “사전 세금완납”(세금 및 세금체납금 또는 상응하는 담보 제공 포함)이 필요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할 때 세무기관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또는 담보증명서에 의거해야 합니다.

PwC의 관찰: 해당 개정은 납세자의 구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세무총국 2024 년 법치정부 건설 현황 보고》⁴에 따르면, 2024 년 전국적으로 접수된 세무 행정부의 사건은 5,243 건이며, 전국 1 심 신규 세무 행정소송 사건은 1,739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본》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행정부의 “사전 세금완납”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납세자가 세수 구제를 보다 잘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전국의 세무 행정부의/소송 사건 수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교환, 감독관리, 보관

14. 세무정보 교환 [제 6, 18, 19, 20 조]

주요 개정: 국무원 부문 간의 세무정보 조회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세무기관은 “공안, 금융관리, 해관 등 부문을 통해 납세자의 신분, 계좌, 자금거래, 수출입” 등 정보를 조회 및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과 기타 등기부문의 설립, 변경, 등기, 말소, 폐지, 취소 정보는 세무기관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취득가능한 자료/정보를 유관 부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고,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복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PwC의 관찰: 향후, 세무기관은 보다 큰 권한을 부여받고, 더 많은 채널을 통해 납세신고 정보에 대해 교차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 3 자 정보로 인해 더 촘촘한 조세망이 짜여지고, 납세자의 컴플라이언스, 파일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며, 나아가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재세 담당자보다 납세자를 더 잘 파악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5. 플랫폼 경제 상시화 감독관리 [제 29, 62, 72 조]

주요 개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기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운영자, 사업종사자(从业人员)의 신원 정보와 납세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국무원 세무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운영자, 사업종사자의 납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 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랫폼 내 운영자, 사업종사자를 위해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내 운영자, 사업종사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의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wC의 관찰: 《의견수렴본》 29 조에서는 플랫폼에게 “사업종사자 납세신고”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행 각 세목별 실제 법률에 따르면, 플랫폼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 유형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미등록 자연인 경영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모든 경영자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 29 조는 플랫폼의 세금 신고 요건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이 신고해야 할 “납세 관련 정보”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법규의 추가적인 규범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조세 감독관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2024 년말,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금 관련 정보 신고 규정(의견수렴본)》에서는 플랫폼 운영자와 사업종사자의 점포, 매출 등 정보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세금 관련 정보가 “납세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견수렴본》은 《세수징수관리법》의 관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상위 법률로서의 지지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 만 위안이라는 벌금이 《의견수렴본》 전체에서 계산서 허위 발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플랫폼의 세금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벌금이 적절한 지 여부의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16. 세금 관련 자료 보관 [제 27 조]

주요 개정: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은 “생산/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생산/운영에 종사하는”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PwC의 관찰: 이는 자연인도 세금완납증빙 등 세금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자연인이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납부를 처리할 때 특별추가공제를 적용하려면 관련 협의,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에 따르면, 장부, 회계증빙, 보고서, 세금완납증빙, 계산서, 수출증빙 및 기타 세금 관련 자료는 일반적으로 10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연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세무기관이 징수관리의 초점을 점차 자연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적 책임

17. “탈세” 정의 확대, 보충조항 추가 [제 73 조]

주요 개정: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서의 “탈세(偷税)”라는 단어를 “탈세(逃税)”라는 단어로 변경하여, 《형법》의 “탈세죄(逃税罪)”와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세분화하여 “탈세”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1) 전자증빙, 전자계산서 등 세금 관련 전자 데이터 또는 세금 관련 회계 소프트웨어 매개변수 규칙의 조작, 위조, 불법 삭제; 2) 허위 과세기초 조작, 허위 지출 표기, 소득/재산의 이전과 은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득을 분할하는 행위; 3) 허위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여 세금 혜택을 누리는 행위; 4) 설립등기를 신청한 납세자가 이미 과세행위를 발생시켰고 과세액도 비교적 크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가 과세행위를 발생시키거나,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가 과세행위를 발생시키고 과세액도 비교적 큰 경우로서,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탈세 행위.

PwC의 관찰: 《의견수렴본》에서는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서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납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립등기 처리 여부에 따라 상황 4)와 상황 5)로 세분화했습니다. “설립등기를 이미 처리한 납세자가 과세행위를 발생시켰고 과세액도 비교적 크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더이상 감안하지 않고 직접 탈세로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업 재세 담당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가 과세행위를 발생시키거나,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가 과세행위를 발생시키고 과세액도 비교적 큰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이라는 전제가 적용되므로, 이는 통상적으로 등기할 필요가 없는 자연인의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해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충조항 6)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탈세 행위 중 “과세액이 비교적 크다”는 것과 관련하여 좀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8. 탈세를 제외한 '미신고로 인한 세금 미납 또는 과소 납부'의 벌금 감면 [제 74 조]

주요 개정: 탈세 행위 이외의 기타 “미신고로 인한 세금 미납 또는 과소 납부의 경우”에 대해서 3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등급은 세금과 세금체납금만 추징하고, 2 등급은 상황이 비교적으로 심각한 경우로서 50% 이하의 벌금이 추가 부과되며, 3 등급은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로서 50% 이상 1 배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PwC의 관찰: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서는 “탈세”와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세금과 체납금(세금체납금)을 추징하고,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관적 의도라든지 악의적 정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의견수렴본》의 개정은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단계적인 처벌을 제공했으므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해진 것이고 세무기관에는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와 매우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19. 벌칙 완화/감경/면제 조항 신규 추가 [제 87 조]

주요 개정: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세 위법 행위를 시정하거나 세무기관의 조세 위법 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상황의 심각 정도에 따라 행정 처벌을 완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PwC의 관찰: 해당 규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각 지역의 세무행정처벌 재량기준에 따르면,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협조 정도나 시정 태도, 자발적인 세금 보충 납부 여부, 사회적 영향 및 유해한 결과, 지난 몇년간의 위법행위 발생 건수 및 위법금액 등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20. 계산서 위법행위의 처벌수준 강화 [제 82, 83 조]

주요 개정: 계산서 불법 인쇄, 전자계산서 위조의 경우, 벌금을 기존의 5 만 위안 이하였던 것을 최고 50 만 위안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세금감독관리 장치를 설치/사용하지 않거나 세금감독관리 장치를 훼손 또는 무단 변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1 만 위안 이하였던 것을 최고 50 만 위안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산서 허위 발행에 대해서는 최고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wC의 관찰: 계산서 위법행위는 세무기관이 고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입니다. 계산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더 잘 억제하는 한편 “과실에 합당한 처벌” 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21. 비은행 지급기관의 의무 신규 추가 [제 43, 45, 62, 86 조]

주요 개정: 송금 및 비은행 지급기관의 지급계좌 잔액을 행정강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비은행 지급기관이 세무기관의 지급계좌 조사, 동결 또는 이체결정에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했습니다.

PwC의 관찰: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서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협조 의무, 벌칙에 대해서만 규정했을 뿐입니다. 《의견수렴본》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비은행 지급기관을 《세수징수관리법》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기관은 향후 조세 협조 방면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구축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2023 년 발표한 《1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따르면, 《세수징수관리법》은 제 1 유형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즉, 성숙한 조건을 갖추어 임기 내(2023 년 3 월부터 2028 년 3 월까지)에 심의를 위해 법률 초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세무총국, 재정부가 발표한 《의견수렴본》은 의견수렴 이후 국무원 단계에서 통과될 수 있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세법은 최소 두 번의 심의가 필요하며, 매번 심의에 대해서 사회대중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5, 6 월에 발표한 《국무원 연간 입법업무계획》,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연간 입법업무계획》에 주목하여 《세수징수관리법》의 개정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 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세수징수관리법》에 대한 가장 큰 개정으로, 《의견수렴본》은 시대에 발맞추어 여러 신흥 경제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세구제, 파산세무 등의 쟁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본》에서는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왔고 각 지역에서 추진/시행 중이며, 2015 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발표한 《세수징수관리법 개정 초안(의견수렴본)》에서도 반영되었던 “세수사전결정(Advanced Tax Ruling)”이 빠져있습니다. 아마도 세수사전결정은 입법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각 지역에서 별도로 탐색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납세자들은 세수사전결정이 《세수징수관리법》에서 잘 자리를 잡아 중요하고 복잡한 거래의 세무처리에 대해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PwC 는 각 당사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당사의 개정제안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귀하의 관찰, 건의사항, 사례를 공유해 주신다면 협력해서 정책 제정자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세수징수관리 제도를 보완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석

1. 2025 년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개정 의견수렴본)》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356/n810961/c5239263/content.html>
2.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5081/content.html>
3. 2015 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개정 초안(의견수렴본)》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24/c1448892/content.html>
4. 《국가세무총국 2024 년 법치정부 건설상황 보고서》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4/c102374/c102386/c5239367/content.html>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 <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5 年 4 月 3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 <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5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